

1.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제안

1.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 시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의 무분별한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이 존재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 7.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등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금지되던 각종 소품 및 시설물설치와 각종 집회 제한 등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지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자금에 있어서만 엄격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운동방식, 기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일부 선거운동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8조를 개정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서는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할 수 있으나,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식은 금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를 금지하고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 제안사항들은 기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이 담긴 개정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을 정도로 보편적 공감대를 갖추고 있는 사안이며, 아울러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도 김영배 의원안(의안번호: 2110724)을 비롯하여 다수 발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2. 국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성이 반영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국회의원 1인당 인구 10만 명 내외인 반면에 한국은 의원 1명이 약 16만 7천명을 대표하고 있다.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은 국회의원의 반응성 등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OECD 평균에 준하여 국회의원 1인당 인구 10만 명 정도로 정하고, 인구변화에 발맞춰 탄력적인 정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안(의안번호: 2005632)은 인구 15만 명당 국회의원 1인,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 2005634)은 인구 14만 명당 국회의원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회의원 숫자를 316명(박주현 의원안, 의안번호: 2002832), 360명(심상정 의원안, 의안번호: 2010785)으로 증원하는 안도 발의된 바가 있다. 국회의원 숫자 확대에 대한 예산 증가분은 국회의원 세비 삭감 또는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 배정 숫자의 일부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위성정당 방지법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였고, 더불어민주당도 원외 정당인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결과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되고 말았다.

2020년 총선 직전에 거대 양당이 당리당락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한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역사에 퇴행으로 기록될 만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건이었다. 이에 위성정당 신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는 민형배

의원안(의안번호: 2114624)와 강민정 의원안(의안번호: 2115991)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선거구에 일정비율 이상을 공천한 정당으로 하여금, 비례대표 명부를 일정 비율 공천을 의무화하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페널티 조항을 둬으로써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정당은 법적인 규제를 편법적으로 피하는 정치적 위성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 비례성이 증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도입

단순히 위성정당방지를 위한 법개정을 넘어서 비례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보다 발본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국회에 논의중인 ‘위성정당방지법’ 도입을 통해서 지난 총선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애초에 반쪽자리 개혁입법이었던 ‘준연동형’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비례성 개선 및 구현이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이상민 의원안(의안번호: 2117732)은 권역별비례제 도입 등을 통한 비례성 개선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권역별 봉쇄조항이 높게 설정되어서 다당제를 가로 막을 뿐 아니라 여전히 사표가 다수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표율이 적고, 비례성이 확실히 개선되어 유권자 민의가 잘 반영된다고 평가되는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제도를 참조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라. 비례대표 비율의 명문화 및 확대

비례대표는 17대 56석, 18대·19대 54석, 20대 47석, 21대 46석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거대 양당은 헌법상 예정되어있는 비례대표제를 지역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의 편의를 위한 야합을 통해 별다른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차제에 감소추세에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명문화하여 정치적 야합을 통하여

비례대표를 감축시키는 부정적 경향을 중단해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각 정당들의 취약한 민주적 절차로 인하여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문제제기가 높음을 감안하여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선거구획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18개월 전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획정위원회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선거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 획정을 선거직전까지 하지 않는 나쁜 관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18대 국회는 47일, 제19대는 44일, 제20대는 42일, 제21대는 39일전에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유권자는 후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크나큰 불합리함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의 의석수에 대한 조율이 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여 선거구 변동범위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정치 기득권 정당들의 야합으로 지역선거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경향이 짙었다는 점에서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명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에서의 선거구획정이 촉박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밀실야합의 결과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와 회의록 등을 모두 기록하고,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 상설기구로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위원 선발의 절차도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회에서 주요 정당에 의하여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절차를 막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차기 선거의 구체적인 의석수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 시한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국회가 일정 기한 내에 가부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조항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local party) 제도 도입

가.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고,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정당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규제를 촘촘히 두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당의 설립이 자유로우며 특히 법률에서 정당의 당원숫자를 특정 숫자 이상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도 정당법이 아예 없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정당을 설립할 때에 특정한 당원 숫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우리 정당법의 경우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와 인구가 적은 제주의 경우에도 별다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도당의 최소요건을 무조건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은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특히 정당법을 개정하여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정당설립에 있어서는 1개(현행 5개) 이상의 시·도에서 500명(현행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은 법안이 21대에 민형배 의원안(의안번호: 2112802), 김두관 의원안(의안번호 2114952), 이상민 의원안(의안번호:2117721)이 발의되어있으며, 특히 이상민 의원안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나. 지역정당 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중앙당 중심의 구조로 인하여, 지방 및 지역사회 나름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의 폭이 대단히 좁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멸의 위기에 마주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제를 충실하게 다루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구조와 정치활동의 문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방선거에만 대응하는 지역정당 제도를 허용할 필요도 있다. 일본,

독일 등 적지 않은 국가에서는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local party)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정당 설립은 19대 국회(원혜영 의원안, 의안번호: 1914390)와 20대 국회(천정배 의원안, 의안번호: 2010467)에서 각 발의된 바가 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법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역정당은 각 지역의 지방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정당과의 이중당적을 허용함으로써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의 유기적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현재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의 결정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가 늘 문제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지나치게 과도한 ‘단일화’ 논의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민의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결선투표제는 20대 국회에서는 노회찬 의원(대통령 결선투표제: 의안번호 2004779,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의안번호 2008413), 채이배 의원(대통령 결선투표제: 의안번호 2005006), 21대 국회에서는 이은주 의원(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의안번호 2113325)이 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두 번에 걸친 투표가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비용이 문제라면 결선투표제와 유사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호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대표적으로 실시되는 선호투표제의 투표방식은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순위를 기입하는 형태”이다. 개표방식은 먼저 각 투표자가 기입한 1위 후보를 집계하여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그를 당선자로 결정하지만,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저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최저득표자가 받은 표에 적힌 2순위 후보들에게 분배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5. 성평등 공천확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의회 진출은 낮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7%였고, 2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원은 총 57명으로 19%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57명의 의원도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공천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 민주당은 32명(12.6%), 국민의힘은 26명(10.2%)를 공천하는데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5. 12. ‘정치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결정문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행법은 지역구의원 선거의 정당후보 공천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규정에 불과한데, 이를 차제에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21대 국회에서는 송옥주 의원안(의안번호: 2113851), 남인순 의원안(의안번호: 2108432), 김영배 의원안(의안번호: 2107633), 정춘숙 의원안(의안번호: 2105739), 양금희 의원안(의안번호: 2101171)에서 선출직의 성평등 공천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담긴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기존의 공직선거법은 잠정적 우대조치 성격의 성별 할당제에 가까운데, 이보다는 성별균형과 평등의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수용하여, 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있어서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남인순 의원안을 중심으로 개혁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 정당들이 공직자후보 공천에서 성별균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이 필수적이다. 현 제도는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보조금 액수가 현저히 적어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각 정당이 성평등 공천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디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유사한 입법사례로 프랑스는 단계적으로 디센티브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성평등 의회 구성에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

6.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도 그 신분과는 별개로 국민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모두 유사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차원의 정책 활동조차 법적 처벌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4. 29.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표현행위,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상의 최소 침해, 수단의 적합성, 법익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국회의장 및 정부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의 현행법이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교사, 공무원의 당원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주요 관련 법안 7개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가 있으며(의안번호: 2104674 등), 이재정 의원도 정당법 개정안(의안번호: 2104353)을 발의한 바 있다.

7.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유한 주체라는 점에서 볼 때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 내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은 정치적 참여권의 주체가 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2021. 12. 6. 국가인권위 결정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참정권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되었고,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연령도 일부 하향되었으며, 주민투표법 및 주민조례발안 및 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기준도 하향되었다. 그러나 현행 개정 법령만으로 청소년에게 당면한 교육 및 인권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경우 만 18세로 하향하는 정부안(의안번호: 2106965)이 발의되어있고, 국민투표법의 경우도 만 18세로 하향하는 백혜련 의원안(의안번호: 2100397), 이탄희 의원안(의안번호: 2114488)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정당가입연령이 만 16세로 하향되었으나, 만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탄희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의안번호: 2114585). 또는 정당가입연령은 각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기고, 연령가입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 이은주 의원안(의안번호: 2103272), 박상혁 의원안(의안번호: 2107761) 등 많은 법안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하되,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인 교육감선거에서부터 선거연령의 하향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을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은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의원안(의안번호: 2102731), 강민정 의원안(의안번호: 2110559) 등이 발의한 바가 있다.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으로 국한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선거권 등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기도 하다. 더욱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2호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가입이 가능한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체계적인 정합성도 맞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강민정 의원안(의안번호: 2110560)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개정안이다.

8.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심각한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불비례성은 시민들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불신마저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번의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거대 양당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과도한 의석수를 점유해왔다. 특히 시·도의회 선거에서는 제1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시·군·구의회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과점하는 양상이 반복되어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한 일부 시범지역을 추가하는 수준의 미진한 입법을 했을 뿐, 발본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은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

가.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비례성 개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7년에도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전면비례제를 기초의회에 도입하는 방안과,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하되 3인 이상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김두관 의원안(의안번호: 2115920)이 기초의회 선거에서 발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의회 총정수를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초의회에서 지역구를 없애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초의회의 전면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08)의 경우 지방의회 선거에서 기초와 광역의회 공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1로 하되, 광역의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를 확대하여 3인~5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 역시 충분한 개혁적 함의를 띠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지방의회 선거 선거구획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

한편 지방의회의 선거구획정에서 게리멘더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및 기초의회선거와 달리 별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부재하기 때문에 밀실 야합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 위원구성을 광역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광역의회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초의회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 개혁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이은주 의원안(의안번호: 2113308)에도 잘 반영이 되어있다.

9.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장벽 해소

가. 선거공영제 확대

현재 공직선거에 출마하는데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 기탁금 제도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헌법재판소도 고액의 기탁금규정이 후보난립의 방지, 후보자의 성실성 담보 등 합리적인 선거사무의 집행이라는 공적 요구를 위하여 불합리하게 개인의 참정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차례 기탁금을 하향하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기탁금반환의 기준이 너무 높아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이는 결국 고액의 기탁금과 결합하여 피선거권행사의 위축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기탁금제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영국, 캐나다 등도 100만 원 이하 수준의 액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에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 1인당 국민소득대비 기탁금액은 한국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 제도는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 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가 4.19혁명으로 폐지했으며,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개헌을 추진하던 1972년에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기탁금 액수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수차례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하향되어온 연혁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기탁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 재력이 없는 정치신인 등을 배척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20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및 청년 계층에 대하여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개정을 하였는데, 장애인 및 청년계층에 대한 감액을 넘어서 전면적인 하향 조치가 바람직하다.

더불어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반환 기준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15%는 선거비용 50%를 보전 받고, 10% 미만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비용 보전 비율 역시 기존 정치 기득권에 의한 장벽으로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도전을 가로막는 만큼, 획기적인 보전비용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 특히 실제로 선거비용은 기탁금 보다 훨씬 큰 액수라는 점에서 더욱 더 하향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청년 계층 등에 대한 기탁금 폐지 등의 개정안이 주로 제기되었고 전면적인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안(의안번호: 2016379)은 후보자 기탁금을 1/3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유효투표총수의 5%이상 득표한 후보자에 대하여 전액 반환·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장 발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교호순번제 도입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시기 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호순번제는 상위순번 후보들에게 초두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불합리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다. 아울러 지방선거의 경우까지 국회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지방선거 기호까지 배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은 ‘교호순번제’ 도입을 통하여, 기존 정당에 부여하는 불합리한 혜택을 해소하고, 정치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다. 봉쇄조항의 하향

현재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서 정당지지율 3%를 상회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할당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47석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될 경우에 비례성 개선 및 구현·사표 방지 등을 위해서는 봉쇄조항이 하향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봉쇄조항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봉쇄조항이 갖는 효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는 상황에서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인 2%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10. 투표권 실질적 보장

참정권의 가장 으뜸인 실질적 투표권 보장은 지속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투표권 보장 확대를 위한 소기의 입법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미완의 과제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공직선거법에는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늘 문제가 되어왔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도 단계적으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받게 되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권은 여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3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종사하는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공민권 행사가 방해받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 투표시간 연장

한편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장시간 근로, 교대제, 원거리 출퇴근, 근로형태 등의 이유로 인하여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투표하러 갈 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유권자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사전투표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들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처럼 최소 오후 8시까지의 투표시간 연장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은주 의원안(의안번호: 2105073)은 오후 9시까지로 투표시간 연장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개혁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장애인·홀리스·재외국민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

투표소가 2층이나 3층, 지하에 설치됐으나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의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주거지와 소재지가 다른 홈리스·노숙인을 위한 공공역사 투표소 확대방안,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예산 및 제도개선도 경시될 수 없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가입 단체 명단

(가나다 순, 2022. 10. 25. 오후 5시 현재)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강릉경실련,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거제경실련,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설산업연맹,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공주시농민회, 광명경실련, 광양진보연대, 광주경실련, 공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미경실련,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경실련,
군산시농민회, 군포경실련, 군포청년회, 금속노조,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경실련,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전경실련, 대전민중의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학노조, 디자인 밝은세상,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경실련,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 민주노련 광성, 민주노련
 광주상무, 민주노련 광주양동, 민주노련 구로금천,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김포, 민주노련 남동,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한산성,
 민주노련 노량진,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동울산,
 민주노련 동작,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말바우, 민주노련 목련, 민주노련
 무안, 민주노련 밀양, 민주노련 부산기장,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부,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서강, 민주노련 서부,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꽃,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 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석계주변(북부지역), 민주노련 송파, 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 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 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 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 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 민주노련 시흥, 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
 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 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 민주노련 신매, 민주노련 안산,
 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 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 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 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 민주노련 안산동부, 민주노련 안산오일장,
 민주노련 양주, 민주노련 여수, 민주노련 영등포, 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
 민주노련 오천, 민주노련 용인, 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 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 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 민주노련 인천,
 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종로, 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 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 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
 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 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 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평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 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죽도, 민주노련 중부, 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 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 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 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
 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 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 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련 지산, 민주노련 진주, 민주노련 충청, 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 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 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 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 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 민주노련 충청 향남 지부, 민주노련 태평백화점 주변(동작지역),
 민주노련 푸른길, 민주노련 함안, 민주노련 해남, 민주노련 화성오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강원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여성노조,
 민주일반연맹,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밀양시농민회, 범민련경남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청년회, 분당여성회, 분당청년회, 불교평화연대,
 비정규교수노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무금융연맹,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연맹,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천군농민회, 선거제도개혁연대, 성남여성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경실련,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경실련,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시농민회,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산경실련, 안산청년회, 안성시농민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알바노조,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시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평경실련, 언론노조, 여수경실련,
 여수시민협, 여수진보연대, 여주군여성농민회, 여주시농민회, 연천군농민회,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농민회, 영암군농민회, 영양군농민회,
 영양군여성농민회, 영주시농민회, 영천시농민회, 예산군농민회, 예수살기,
 예천군농민회, 옥천군농민회, 완주군농민회, 용인여성회, 용인청년회, 울산겨레하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주시농민회, 음성군농민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의령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이천여성회,
 이천여주경실련, 익산시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익산참여연대, 인천경실련,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임실군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수군농민회, 장흥군농민회, 전교조,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북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까치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발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염창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우장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화곡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과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노륜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마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성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제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행당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화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구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금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노량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사당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송실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신대방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양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논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담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당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대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마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송인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일요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1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2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3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5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6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청계삼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경동시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경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국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대송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동부시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면목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미도파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상봉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수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약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역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장안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전농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태능시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한빛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회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보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평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노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미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삼선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창동1.2.3.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상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대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초강남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소래포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원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신촌마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아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영등포시장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영등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신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원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정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익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가좌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계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남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동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북성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신도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종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파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평택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홍성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황학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첼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회의경기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전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연합, 전여농 충남연합(준), 전여농경북연합, 전주경실련, 전주시농민회,
 전주시여성농민회, 정보경제연맹, 정선군농민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중연대,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천시농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주권자전국회의,
 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 진도군농민회,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안군농민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녕군농민회,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천안시농민회, 천안여성회, 철원군농민회, 청년 다락, 청년더나은,
 청년유니온, 청송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청주시농민회, 청주시여성농민회,
 청주청년회, 촛불문화연대, 춘천경실련, 춘천시농민회,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평택시농민회, 평택여성회, 평택청년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센터 하나, 포천시농민회, 포항시농민회,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하남희망연대, 하동군농민회,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함양군농민회, 함평군농민회,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해남군농민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여성농민회, 화섬식품노조, 화성시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횡성군여성농민회 (총 690개 단체)